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939

발의연월일: 2020. 8. 13.

발 의 자:우원식·송재호·김회재

인재근 • 이해식 • 박홍근

김경만 • 유동수 • 양정숙

박성준 • 권칠승 • 홍정민

이성만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료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추적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성과 결과물 중에서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가 허다함.

그러나 이처럼 사업화 등에 실패한 사례 등에 대한 분석이나 대책을 담은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정감사 등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추적평가에서 연구성과의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사업을 분석하고, 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물 등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5항 등).

법률 제 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추적평가"를 "추적평가(연구성과의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사업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성과평가의 실시에 관하여"를 "제1항에 따른 자체성과평가 및 제5항에 따른 현장방문조사의 실시에"로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자체성과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장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자체성과평가의 실시) ①	제8조(자체성과평가의 실시)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	2
개발사업에 대한 자체성과평가	
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5년간	4
의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대한 <u>추적평가</u>	추적평가(연구성과의 활
	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사업
	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
	회는 제1항에 따른 자체성과평
	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사업
	을 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 단
	체 또는 기업의 장은 현장방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	⑥ 제1항에 따른 자체성과평가
<u>성과평가의 실시에 관하여</u> 필	및 제5항에 따른 현장방문조사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의 실시에
한다.		